

‘승려사유재산 종단 출현’에 대한 각계 반응

지난 1월21일 공고된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현에 관한 령’과 관련 생존시 모든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 마치 “살아있을 때 스님들 개인명의로 재산을 종단에 증여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종헌과 승려법에 근거를 둔 이번 령은 “출가하여 정진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스님의 출가정진에 부합하도록”하

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령 제정 후 종단의 대부분 스님들은 “종단에서 진작 제도화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본지는 원로의원,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현에 관한 령’ 시행과 관련 된 입장을 청취했다. 다음은 스님들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 밀운스님(원로회의 차석 부의장)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스님들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은 예전부터 필요하다고 했던 것으로 이번에 실행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스님들이 갖게 된 재산은 스님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전부 종단의 것이고 신도의 것이다. 나는 이미 (종단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써 놓았다.

• 호성스님(제16교구본사 교운사 주지)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찬성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유재산이 없는데 무엇을 귀속하라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다. 종단 소임자나 주지 소임자 등 책임 있는 스님들이(우선) 기증하도록 해야 한다. 주지 임명장을 받을 때 서약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 법광스님(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대구 파계사 주지)

스님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일부 스님들이 이해를 못해 걱정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 찬성한다.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홍보하여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3월에 열리는 중앙종회 전에 불교신문사가 주최가 되어 집행부, 종회, 교구본사 주

예전부터 필요...이제 ‘실행’ 이미 종단귀속 유언장 썼다

스님 재산은 전부 종단·신도 것

종단 주요 소임자부터 솔선 주지 임명받을 때 서약하자

적극 찬성... 일부 오해 아쉬워

불제자에게 생긴 사유재산 마땅히 종단으로 회향해야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 계기로 삼길

지가 참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 법진스님(중앙종회의원·해인총림 해인사 승가대학장)

출가자가 삶을 회향할 때 그동안 형성된 재산을 종단으로 돌려놓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제자로 살면서 생긴 사유재산이 있다면 마땅히 종단으로 회향해야 한다. 갑자기 입적

한 스님이 남긴 재산이 종단으로 회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도완스님(중앙종회의원·영월 범흥사 주지)

당연한 일이다. 진작 그랬어야 할 일이다.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여 생긴 재산이 삼보정재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삼

보정재를 수호하고, 또 재원이 마련되어 유용하게 쓰여, 결국은 종단발전과 불교발전으로 회향될 것이라 믿는다.

• 정념스님(조심호계원장·전 양양 낙산사 주지)

찬성한다. 일부 부작용이 있고 미비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 불교가 어디로 가야되는지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바람직한 승가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사회에 스님들이 무소유로 아름답게 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성효스님(중앙종회의원·용인 용덕사 주지)

종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출가자라면 당연히 속가로 재산이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출가할 때 가져온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종단 재산으로 해야 한다. 옳은 일이지만, 유언장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 권법을 조장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도들이 재산을 관리 한다든지, 사찰마다 임원진이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재단 형태의 이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총무원 예방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노회찬 대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용산참사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게 됐다”고 인사를 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인 노회찬 대표는 모친이 독실한 불자이며, 1981년에는 선운사 참당암에 한 달간 머물며 공부한 인연도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종단-법인가간 원활한 협력 증진”

법인법 제정...결계포살법 법계법 개정 예고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1일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과 ‘법계법’ 개정안과 ‘법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는 “그 동안 진행된 결계신고와 포살법회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법의 개정의 주요골자는 △결계 신고일을 결계일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로 법에 명시 △포살은 결계기간(하안거, 동안거) 중 월 1회 이상

개회 △이 법 제9조에 의한 관리제한의 구제는 해당 자격취득에 필요한 결계록 등재 횡수를 채웠을 경우에 구제 가능한 것 등이다.

법계법 개정안은 법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제5조 4항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개정 취지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는 “종단의 각종 위원 임기가 일반적 으로 4년이고 최소 3년 이상인데 법계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면서 “다른 위원회 위원 임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법인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법인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절차를 마련 함 △법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사항을 정함 등이다.

총무부는 법인법 입법예고에서 제정 취지에 대해 “종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종무기관, 사찰 또는 승려가 설립한 법인의 종단 등록 절차와 등록된 법인에 대한 종단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단과 법인가간의 원활한 협력과 발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중흥 발판 마련하는 해”

중앙종무기관 신년하례회서 ‘다짐’

“불교중흥을 우리 시대에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듭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된 중앙종무기관 및 유관기관 신년하례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새해 덕담을 통해 “종단이 내세우고 있는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가 중흥하기를 기원한다”면서 “건강한 여러분(종무원들)이

있기에 불교중흥을 못 이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선어록(禪語錄)에 자주 등장하고 선가(禪家)에서 두루 사용되는 ‘안횡비직(眼橫鼻直)’을 인용하며 종무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눈은 가로(橫)로, 코는 아래(直)로 있다는 말로 함스님의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設誼)〉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눈이 안 보이고, 코가 잘못된

분들은 평생 소원이 눈이 바로 되고, 코가 바로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면서 “평생 남들이 이루지 못할 소원을 이미 갖추고 있는 종무원들이 있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새해 덕담을 통해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의 마음을 지니면 소통과 화합이 잘 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불교중흥은 민족이 잘 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교역직 종무원과 재가종무원, 조계사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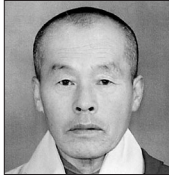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불교신문〉은 “종지와 종책의 선양을 위한 종단 언론시책과 홍보업무 및 포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관지령’에 근거해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와 총무원장 스님 결재를 득한 전국 본말사 주지 인사 내용을 소개합니다(교구본사 순). 지면 사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다음호에 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임명일(2월11일 종무회의 결과)



서강스님  
예산 청정암



성덕스님  
경산 원효암



운천스님  
남원 선원사



보산스님  
원주 안수암



평상스님  
무주 백련사



관정스님  
무주 관음사

동안거 2244명 정진

수좌회 ‘방함록’ 발간

불기 2554년 동안거에 2244명의 수좌가 정진했다. 조계종 전국선원 수좌회가 오는 28일(음력 1월15일)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발간한 〈방함록〉에 따르면 97개 선원에서 2244명의 스님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립 선원 5곳에서 204명, 비구 선원 59곳에서 1196명, 비구니 선원 33곳에서 844명이 정진했다. 외호 대중은 370명으로 집계됐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영축총림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佛之宗家 國之大刹  
계율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 율원에서는 부처님의 해명을 계승하고 승가의 청정지계가풍을 확립하고자 금번 2010학년도 율원 전문과정 및 연구과정 신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스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인원

전문과정 ○명 / 연구과정 ○명

모집일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0년 2월 28일(음1월15일)〈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전형 및 면접  
2010년 3월 1일 오후1시(음1월 16일)
- 면접장소 - 율원큰방
- 합격발표 - 추후 전화 통보

문의처

055)382-8348(율원), 055)382-7182(종무소)

불기 2554년 2월 24일

통도사 영축총림율원율주 中山 慧南 · 율원장 又雪 德文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모집 공고

조계종 교육원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강원으로 선정된 불지종가 국지대찰 통도사 승가대학은 지금까지 53회 졸업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승 대덕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시대를 이끌어갈 학인스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방부 바랍니다.

모집학과

치문과 ○○명, 사집과 ○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 수계증 사본 각2매
3. 주민등록초본 2매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발급)
5. 은사스님 추천서(각 2부)
6. 사진4매(사미의제, 대가사 복장)
7. 입학금 : 20만원

문의처

055)384-2035(원통방 지객스님), 055)383-2363(강원, 감로당) 055)382-7182(종무소 교무국)

불기 2554년 2월 24일

영축총림 통도사 운영위원장 주지 茅山 頂宇 · 학장 慧嚴 友眞